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별정우체국 3인 관서 운영 근거 마련 등 〉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88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별정우체국 3인 관서 운영 근거 마련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3. 18.

다. 회부연월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 적자를 사유로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우체국을 2인 관서 체제로 운영하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우편·예금·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특히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과 달리 우편업무와 함께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등 금융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전담할 2인의 실무 전문인력과 감독 및 경영을 총괄하는 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한 3인 관서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중성·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1인 결정 체계에 따른 잠재적 위험 해소 및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체국 기본인력의 3인 관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별정우체국 3인 관서 운영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 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직원의 채용) ①·② (생략) <u><신 설></u>	제8조(직원의 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금융사고 예방 등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3조의2(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u>

	<u>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u> <u>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u> <u>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	---

나. 검토사항

-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¹⁾ 우정사업본부의 직영 우체국과 동일하게 우체국예금·보험을 포함한 우정 사무를 수행하여 전국적인 우체국망의 한 축을 담당함.
- 2026년 3월말 기준 전국에 직영 우체국 1,813국과 별정우체국 669국이 설치되어 있음.
- 특히, 별정우체국이 1961년 도입될 당시 국가 재정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됨에 따라, 현재도 전체 별정우체국의 95% 가량이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읍·면 지역에 설치된 우체국 중 약 46%가 별정우체국에 해당하는 등 농어촌 지역에서 별정우체국의 비중이 높은 실정임.

1) 「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우체국 도시·읍면 비율(26.3월말 기준)>

구분	직영 우체국				별정우체국			
	읍·면	일반도시	대도시	소계	읍·면	일반도시	대도시	소계
국수	753국	281국	779국	1,813국	634국	9국	26국	669국
비율(%)	41.5	15.5	43.0	100	94.8	1.3	3.9	100

※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특별시·광역시·대도시 특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6. 4.)를 재구성

- 그런데, 통상우편 분야에서의 전자고지 확대 및 소포 분야에서
 의 민간 기업과 경쟁 격화 등 우정사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 등 우정사업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 우편사업의 경영수지는 최근 3년간 △1,572억(23년), △1,659억
 (24년), △3,116억(25년)의 적자를 기록하여 점차 적자 폭이 확
 대되는 추세임.
- 그 일환으로, 일선 우체국 관서의 근무 인원도 축소되어 상당수
 관서는 2인 또는 3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전국의 2,482개
 우체국 중 2인 관서는 325국(13.1%)으로, 직영 우체국 192국,
 별정우체국 133국인 것으로 나타남.
- 별정우체국의 읍·면 소재 비율이 직영우체국보다 높은 만큼 3
 인 이하 관서 비율 또한 별정우체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보임.

<우체국 관서별 인원 현황(26.3월말 기준)>

구분 국별 인원	직영 우체국		별정우체국		합 계	
	국수	비율(%)	국수	비율(%)	국수	비율(%)
2인	192국	10.6	133국	19.9	325국	13.1
3인	214국	11.8	466국	69.6	680국	27.4
4인 이상	1,407국	77.6	70국	10.5	1,477국	59.5
소계	1,813국	100	669국	100	2,482국	100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6. 4.)를 재구성

- 2인 관서 운영에 따른 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 직원 근로환경 문제나 그로 인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우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²⁾
- 우정사업본부는 소규모 관서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별정우체국 직원의 휴직 등 사유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실시하고³⁾, 2인~3인(읍·면 지역) 관서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2인 관서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2인 관서 운영으로 인한 우정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여전하다고 보고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2인의 실무인력과 감독 및 경영을 총괄하는 국

2) 2023. 10. 11.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김병욱·장제원의원 서면질의 등

3)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조(직원의 채용)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 3배수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1.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직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3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장을 포함한 3인 관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⁴⁾의 별정우체국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일부개정]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지역을 말한다.

- 2인 관서 운영으로 인한 주민 및 직원의 불편과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 지역에 속하고 시중 금융기관의 농어촌 지점 감소세와 농축산물 취급수요 등 요인으로 지역에서 우체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만 3인 관서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인 관서로 운영되는 직영 우체국과의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별정우체국보다 읍·면 지역 비율이 낮은 하지만 직영 우체국 또한 상당수가 읍·면 지역에 소재해 있고 2인 관서로 운영되는 국수도 192국으로 오히려 별정우체국 2인 관서보다 더 많은 관서가 운영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정우체국에 국장·직원의 인건비·연금부담금과 업무취급수수료 등 재정지원과 공무원 인력 지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교부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어,⁵⁾ 직영 우체국과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는

5) 「별정우체국법」

제7조(공무원의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

것으로 보이며,

- 직영 우체국 또한 우정사업 경영환경 악화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고 공무원의 정원이 대통령령인 「우정사업본부 직제」와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는 만큼⁶⁾ 관서 인력 충원에 제약이 있음.

○ 따라서 2인 관서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정우체국과 함께 직영 우체국도 포함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 둘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별정우체국에만 추가적인 지원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의 2인 관서도 3인 관서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 또한 읍·면지역이 존재하고 읍·면 단위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의 별정우체국을 이 지역의 별정우체국과 달리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사무비),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제18조(제복의 지급), 제19조(물품의 교부) 등

6)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소속기관별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셋째, 개정안 제13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①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특히 직제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②지원의 목적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음.
-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13조의2는 인구감소지역 내 별정우체국을 3인 관서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지원의 목적이나 범위를 특정함 없이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실질을 예측하기 어려움.
- 비록 시혜적인 조치를 규정할 때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조건인 별정우체국과 달리 특별히 지원하는 점에서 그 지원 내용을 구성할 최소한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다른 권한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인구감소지역의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새로이 두는 것은 그 필요성과 지원 범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①별정우체국 3인 관서 제도화의 경우, 우편사업의 구조적 환경 악화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경영효율화를 통한 2인 근무 관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인 우체국의 3인 관서화는 직영 우체국을 포함한 전체 우체국 운영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②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별정우체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설치지역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별정우체국에 대한 별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35
